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낮은 위험

(주)iM 에셋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아시아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iM에셋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iM에셋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iM에셋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주식회사 iM에셋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6.10.01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10.22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주)iM에셋자산운용, ☎ 02-707-4200, www.im-fund.com)

판매회사 본·지점(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조)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기재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목차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본문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 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원본손실 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은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 (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개설시 수집된 정보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약 정 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10.01)**

iM 에셋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펀드코드 : 29693)

투자 위험 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낮은 위험

(주)iM 에셋자산운용은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5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아시아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므로, 투자위험, 환율변동위험 및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iM 에셋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전략

-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0% 이상 투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는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함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70%	1.05	0.60	0.870	1.3694	209	354	503	819	1,7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45	1.00	1.170	1.7688	181	368	561	966	2,096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35%	0.65	0.20	0.570	0.9689	134	237	344	571	1,2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30	0.85	0.740	1.6190	166	337	515	887	1,933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들의 최근 총보수 가중평균인 연 [0.31]%를 예상치로 포함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온라인형의 경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6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입니다. (작성기준 : 2026.08.31)

주 6)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최초설정일부터 2022년 07월 24일까지는 0.025%(연간), 2022년 07월 25일 이후는 0.02%(연간)으로 적용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클래스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25.10.02 ~ 26.10.01	24.10.02 ~ 26.10.01	23.10.02 ~ 26.10.01	21.10.02 ~ 26.10.01	10.09.08 ~ 26.1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2010-09-08	-1.54	1.22	4.31	-2.27	1.43
비교지수(%)	2010-09-08	-	-	-	-	-
수익률 변동성(%)	2010-09-08	2.28	3.14	3.37	4.84	5.10

주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3년 1월 4일까지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90%) + (Call × 10%)]를 사용하며, 2023년 1월 5일부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사용합니다.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운용전문인력

(2026 년 10 월 01 일 현재, 단위:%)

성명	생년 (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재간접형)				운용경력년수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배현주	1976	책임 (수석)	13개	4,481억원	-	-	20.07	28.78	23.1년
강성호	1972	부책임 (이사대우)	19개	5,768억원	20.86	29.84	20.07	28.78	22.5년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주5)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6)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채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추가설정이 곤란하거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table>
<tr><td></td><td></td><td>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는 이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유동성관리, 투자한도준수 등의 목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BGF 미국달러 단기채권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td></tr>
<tr><td></td><td>환율변동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는 미국달러이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td></tr>
<tr><td></td><td>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 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 조건에 의하여 현재환율이 계약 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td></tr>
<tr><td></td><td colspan="2">※ 투자위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매입 방법</td><td>・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매입
・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 매입</td><td>환매 방법</td><td>・17시 이전 : 4영업일 기준가로 8영업일 지급
・17시 경과 후 : 5영업일 기준가로 9영업일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3">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td></tr>
<tr><td>과세</td><td colspan="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 투자신탁의 증권신고서 및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주식회사 iM에셋자산운용 (☎ 02-707-4200)</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 총액</td><td>10조좌</td></tr>
<tr><td>효력발생일</td><td>2026년 10월 22일</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기구의 사업목적 및 요약 재무정보에 대하여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기구의 종류</td><td colspan="3">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r><th>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
</table>
</td></tr>
</table>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D)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m-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im-fund.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iM 에셋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29693**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96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296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96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296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296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AI2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AP03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AP0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AP035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AP6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형-고액 (S-i)	B44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B44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J1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BT9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BT93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채권-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 해당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 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금액이 예정좌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때까지 판매한 금액으로 판매금액이 확정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2)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그 모집(매입)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 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iM 에셋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29693**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2969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296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296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296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296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AI2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AP03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AP0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AP035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AP6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형-고액 (S-i)	B44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B44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BJ1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BT93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BT93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10.09.08	최초 설정
2011.11.11.	책임운용인력 변경
2012.06.22	2012.09.24. 이후 환매청구 시 모든 종류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면제
2012.12.17	펀드명 변경 (변경전 : 블랙록 아시아 타이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 변경후 : 블랙록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2013.05.03	연금저축전용클래스(C-p) 신설
2014.03.04.	펀드 온라인 코리아 전용 클래스 (S), 기관투자자 전용 클래스 (C-f), 펀드 온라인 코리아 연금저축 전용 클래스 (S-p), 온라인 전용 클래스 (A-e) 신설 C-w 클래스 판매보수 인하
2015.02.17.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5.07.09.	퇴직연금 클래스 (C-Rp), 펀드 온라인 코리아 전용 기관 클래스 (S-i) 신설
2016.02.29.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
2016.11.01.	온라인 연금저축클래스 (C-Pe) 신설

2017.07.26	C-Rpe, CG 클래스 신설
2017.08.28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
2018.03.29	환매수수료 삭제
2019.09.25	기업공시서식 변경 반영 간이투자설명서 기재 정정
2019.11.15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업데이트
2020.11.06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업데이트 투자위험등급 변경(5등급(낮은위험)→4등급(보통위험))
2021.10.02	분할합병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변경(블랙록자산운용→하이자산운용) 펀드명칭, 홈페이지 주소, 연락처 변경
2021.11.16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상 변경사항 반영(6.77%→6.81%)
2022.02.0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최영현→배현주)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갱신 일반사무관리회사 홈페이지 주소 정정 피투자집합투자기구보수 포함 총 보수・비용 오기 정정
2022.07.22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코스콤펀드서비스→신한아이타, 2022 년 07 월 25 일 시행)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율 변경(0.025%→0.02%, 2022 년 07 월 25 일 시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재무제표(반기)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2022.11.08	비교지수 변경 내용 반영(2023 년 1 월 4 일까지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90%) + (Call × 10%)]를 사용하며, 2023 년 1 월 5 일부터는 해당사항 없음)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6.81%→7.51%)
2023.11.08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7.51%→5.44%)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4.06.19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에 따른 펀드명칭, 홈페이지주소 변경 하이자산운용㈜→㈜iM 에셋자산운용 하이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iM 에셋 아시아 퀄리티 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H) www. hi-asset.com→ www.im-fund.com
2024.09.1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종류 S 등 수익증권 관련 설명) 개정사항 반영 종류 S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율 변경(0.20%→0.19%, 2024 년 09 월 12 일부터 적용)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2024.09.26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 투자위험등급 변경(4 등급(보통위험) → 5 등급(낮은위험))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2025.06.2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배현주 → 강성호)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강성호 → 황지혜) 재무제표(반기)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2025.10.23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9.96%→9.55%) 펀드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법 개정사항 반영 지주 사명 변경사항 반영
2026.09.29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강성호→ 배현주)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9.55%→6.96%) 채권평가회사 변경사항 반영((주)에프앤자산평가→이지자산평가(주))
2026.10.22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황지혜→강성호)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주식회사 iM 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 층 (02-707-42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6 년 10 월 01 일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주식-재간접형)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자산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배현주	1976년	책임 (수석)	13개	4,481억원	-	-	20.07	28.78	23.1년	iM에셋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22.01.~현재) 브이아이자산운용 Global Investment Solution팀(10.12.~22.01) 삼성자산운용 해외투자팀(00.06.~08.02)
강성호	1972년	부책임 (이사대우)	19개	5,768억원	20.86	29.84	20.07	28.78	22.5년	iM에셋자산운용 글로벌솔루션팀(19.12~현재) 제이앤투자자문 전략총괄(17.06~19.12) KB자산운용 해외채권팀(11.12~16.09) 국민연금공단 해외증권실(09.10~11.12) 삼성자산운용 해외증권팀(05.05~09.10) 맥쿼리자산운용 전략운용본부(03.05~05.03)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 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조동혁, 이동찬	최초설정 ~ 2011.11.10.
조동혁	2011.11.11 ~ 2021.10.01
최영현	2021.10.02 ~ 2022.02.08
배현주	2022.02.09 ~ 2025.06.23
강성호	2025.06.24 ~ 2026.09.28
배현주	2026.09.29 ~ 현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기간
강성호	2021.10.02 ~ 2025.06.23
황지혜	2025.06.24 ~ 2026.10.21
강성호	2026.10.22 ~ 현재

주 1) 2026 년 10 월 기준 최근 3 년 간의 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증권(채권-재간접형), 투자신탁,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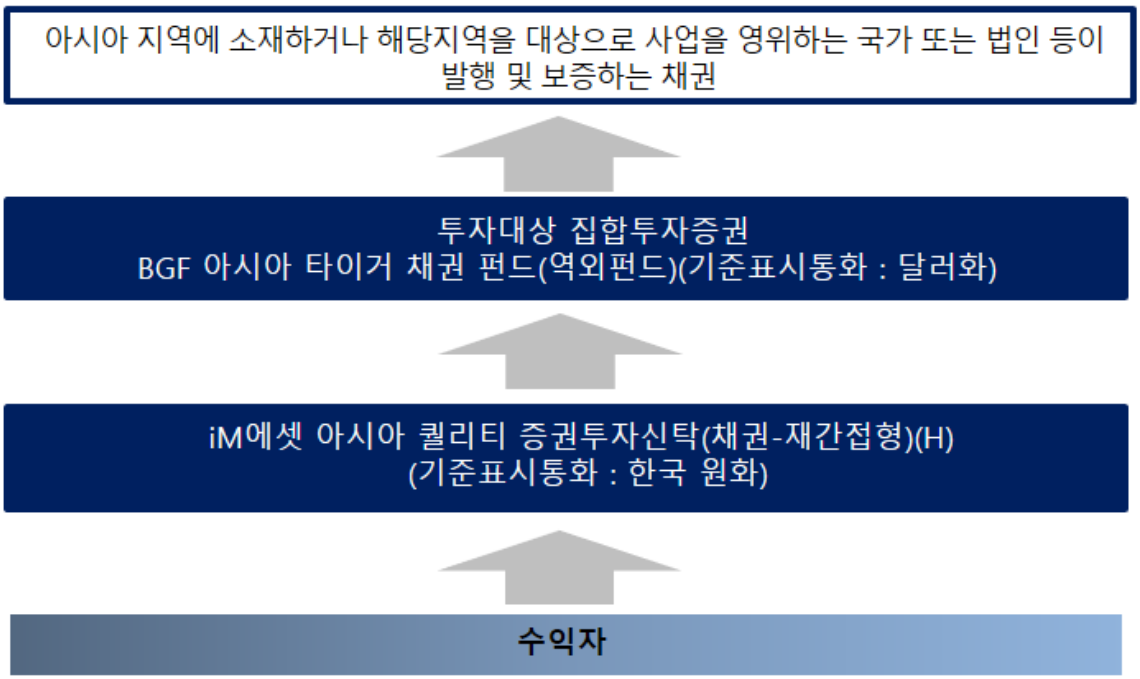

나. 종류형 구조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D)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년[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기관 (F)	기관투자자 또는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고액거래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 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종류) 클래스	가입기준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험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형-고액(S-i)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하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 (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 (C-R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 (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자

다. 모자형 구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전환형 구조 (엄브렐러형 구조)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재간접형 구조

당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인 “BGF Asia Tiger Bond Fund(이하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라 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재간접형 구조의 투자신탁입니다.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외화표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재간접투자신탁(Fund of Funds)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 대상	투자 한도	주요 내용
집합투자증권	50%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국내주식	40%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국내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장내·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장외파생상품 :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단,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은 금리스왑거래에 한함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금리스왑거래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투자증권의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하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 총액의 20%이하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 집합투자증권, 국내주식, 국내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증권, 국내주식, 국내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증권의 대여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의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증권의 차입 : 효율적 운용,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투자 대상	투자제한의 내용	적용 제외
이해관계인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를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 279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마.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제한	▪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 조의 2 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제한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 이 투자신탁은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에 속한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이면서 투자신탁 재산을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 등에 투자하는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최대 100%까지 투자하여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는 주로 투자등급 채권에 투자하지만, 하이일드 채권에도 일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하이일드 채권(High Yield Bond): 하이일드 채권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의 정도를 기준으로 채권의 등급을 정하는 전문적인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저등급(투기등급 및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판정받은 고수익 고위험 채권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피투자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	관리회사	BlackRock (Luxembourg) S.A. (일일운용 업무 및 직접 또는 위임에 의하여 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관리 등 모든 운용상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회사)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블랙록 (싱가포르) 리미티드(BlackRock (Singapore) Limited)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관리회사인 블랙록 (룩셈부르크) 에스.에이.로부터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아 본 회사의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의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조	블랙록 글로벌 펀드(BlackRock Global Funds, 이하 "BGF"라 함)의 하위펀드(하위 집합투자기구) 중 하나 ※ 블랙록 글로벌 펀드(BGF):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개방형 투자회사로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는 복수의 하위펀드로 구성된 "엄브렐러형(전환형)"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설정일 및 소재지	설정일: 1996 년 2 월 2 일 BGF 설립국가: 룩셈부르크
	투자목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총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함 * 기타 비투자등급의 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에 투자 가능 * 통화위험은 유연하게 관리됨 2015 년 7 월 20 일부터 해당 펀드는 RQFII 쿼터*를 통해 중국 역내 채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해당 펀드가 가용할 수 있는 RQFII 쿼터는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향후 쿼터가 할당 되면 이를 통해 펀드 총 자산의 10%까지를 중국 역내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RQFII : 위안화 적격 외국 기관투자자(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s, 이하 "RQFII") * RQFII 쿼터 : 특정 역내 중국 증권에 대해 중국외환관리국이 RQFII 인가 보유자에게 발행한 위안화 표시 투자 쿼터 * RQFII 인가 : RQFII 쿼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중국 이외의 특정 관할지에 소재한 기관에게 부여한 인가 RQFII 쿼터를 통한 중국 본토 투자에 대한 투자위험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중 "RQFII 관련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기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위험	투자자는 해당 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 위험 및 특수위험에 노출되며, 자세한 사항은 [별첨 2-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교지수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추가설정이 곤란하거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는 이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유동성관리, 투자한도준수 등의 목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BGF 미국달러 단기채권펀드(US Dollar Reserve Fund)*'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 BGF 미국달러 단기채권펀드: 유동성이 높고 잔존만기가 짧아 투자위험이 낮은 미국달러표시 단기우량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는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총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및 유동성 투자비중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비교지수를 채택하였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비교지수	상세설명
JP Morgan Asia Credit Index	1999 년부터 JP Morgan Chase & Co. 에서 발표하는 아시아 채권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서, 액면금액 USD 1.5 억 이상이고 잔존만기 1 년 이상인 달러표시 채권을 대상으로 산출되는 채권지수

※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3 년 1 월 4 일까지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90%) + (Call × 10%)]를 사용하며, 2023 년 1 월 5 일부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사용합니다.

▶ 비교지수 삭제 사유 : 해당 비교지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웹사이트 주소는 https://www.blackrock.com/sg/en/products/229407/bgf-asian-tiger-bond-fund-a2-usd#:~:text=Investment0Approach,activity0inC0Asian0Tiger0countries.이며, 지수사용료의 추가비용 부과로 인한 투자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를 삭제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은 원·달러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는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 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 및 금리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환헤지의 개념 및 장•단점**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에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주 1) 이 투자신탁은 주로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하여 환헤지 전략을 수행합니다.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산출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의 경우 계약환율 자체에 이미 비용이 반영되어 있어 비용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헤지에 따른 비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당해 투자신탁 및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하며, 투자의 결정과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의 결정 및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예금과 달리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시장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전세계 금융시장의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경제상황, 정부의 조치 및 세제의 변경 등은 당해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블랙록 글로벌 펀드(BGF)에 속한 하위펀드인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채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추가설정이 곤란하거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의 변화로 인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BGF 아시아 타이거 채권펀드'는 이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으며, 유동성관리, 투자한도준수 등의 목적으로 안정성이 뛰어난 'BGF 미국달러 단기채권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채권 (고수익·고위험 채권)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적격등급 미만인 하이일드 채권 등에도 자산의 일부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이일드 채권 등은 재무상황악화, 신용상태의 악화,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 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또는 법인 등이 발행 및 보증하는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이상을 투자함으로써 외국통화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신탁재산 가치변동위험에 노출됩니다. 즉,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는 미국달러이기 때문에 해당 통화 대비 한국 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투자하여 환율변동위험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표시통화인 미국달러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며 목표환헤지 비율은 해외투자분 순자산가치(NAV)의 최대 100% 수준에서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주가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및 거래상대방 등의 상황에 따라 부득이하게 환헤지를 실시하기 어려워질 경우 일시적으로 환헤지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과정에서 투기적 목적을 위하여 위험회피 이외의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통한 레버리지 효과를 유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화선도거래 또는 통화 스왑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 위험을 부담하며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미정산 수익을 상실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환율변동 제거 효과가 사라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 계약 조건에 의하여 현재환율이 계약 환율 보다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계약이 부득이 조기에 종료되어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가능하며, 이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유동성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금리변동에 따라 동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헤지 전략 등을 구사함에 있어 파생상품을 투자할 때 시장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한 가격움직임을 보일 경우 예상치 못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은 계약종료시점이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 동계약을 차월물 등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이전비용이 발생하거나 차월물과 당월물 간의 가격차이 등으로 인한 손실로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로 인한 레버리지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장외파생상품 거래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화된 장내거래에 비해 장외거래는 개별적인 계약이므로 장내거래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거래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호장치가 없으며, 규제나 감독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외거래의 거래상대방이 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외시장은 장내시장보다 유동성이 취약하므로 계약 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매연기 등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기회비용 및 수수료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의 통화가치 하락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행함에 따라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 발생 가능한 환차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로인한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 등은 전세계 국가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자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RQFII 관련 위험	*RQFII (위안화 적격 외국 기관투자자 -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uonal Investors)제도는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하여 중국 밖에서 위안화를 모집하는 적격 외국 기관투자자("적격투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RQFII 인가 및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로부터 위안화 표시 투자쿼터 ("RQFII 쿼터")를 취득하게 되면, 적격투자자는 해당 적격투자자에게 할당된 RQFII 쿼터를 통해 중국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향후 RQFII 쿼터를 통해 중국 역내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RQFII 제도는 2011 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RQFII 를 통한 중국에의 투자 및 관련 절차(RQFII 에 투자한 자본금의 본국으로의 송금 등)를 규제하는 규정도 비교적 신설된 것입니다. 현재, RQFII 의 위안화 본국 송금은 하루에 1 회 허용되며, 본국 송금 제한이나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관할당국 및 규제당국에 투자규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량권이 현재 또는 향후 어떠한 식으로 행사될 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 선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투자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RQFII 제도가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RQFII 투자펀드들의 RQFII 투자에 대해 본국 송금 제한 조치가 부과될 경우 이는 해당 RQFII 투자펀드들은 환매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QFII 제도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RQFII 자격 상실 가능성 등)은 해당 RQFII 를 통하여 중국의 적격한 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RQFII 투자펀드들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RQFII 자격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해당 RQFII 펀드들이 보유한 RQFII 적격증권을 처분해야 하므로 해당 RQFII 투자펀드들의 성과는 그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RQFII 쿼터가 항상 RQFII 투자펀드들이 투자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RQFII 투자펀드들은 제한적인 투자능력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거나 또는 RQFII 쿼터가 부족하여 투자목적이나 투자전략을 완전히 추구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쿼터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RQFII 가 자신의 RQFII 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 외환관리국은 해당 RQFII 쿼터의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RQFII 쿼터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경우, 이는 RQFII 투자펀드들의 할당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RQFII 투자펀드의 투자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RQFII 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QFII 의 위안화 본국 송금은 현재 하루에 1 회 허용되며, 본국 송금 관련 제한, 자금의 동결 기간(lock-up period) 또는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내 위안화를 역외로 송금할 때 제한이 있으며 진정성(authenticity) 및 법규준수 관련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고, RQFII 보관회사는 중국 외환관리국에 송금 및 본국 송금에 관한 월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향후 중국 법규가 개정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혹은 본국 송금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중국 법규에 대한 이러한 변경사항은 소급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RQFII 투자펀드의 현금에 가해지는 본국 송금 제한은 동 펀드의 환매 이행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RQFII 보관회사는 본국 송금 시마다 진정성및 법규준수 관련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국 송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심지어 RQFII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RQFII 보관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매대금은 해당 자금의 본국 송금이 완료된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환매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본국으로 송금하기까지 걸리는 실제 시간을 RQFII 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RQFII 관련 위험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2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중 RQFII 투자 관련 특정 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TCA 및 여타 국경 간 보고시스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는 2010 년 3 월 미국 고용 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의 일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보고 제도로서 FATCA 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달리 면제되지 않는 비미국 금융기관("외국금융기관" 또는 "FFI")을 포함한 특정 그룹의 자금 수령인에게 미국원천소득으로부터 (혹은 미국원천소득에 기인하여) 혹은 미국 자산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에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5. 6. 10. 미국-대한민국 정부간 체결된 한□ 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라 양국은 자국의 특정 금융기관("보고 금융기관")에서 보고받은 상대국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이러한 목적상 보고 금융기관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직접적인 또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간접적인 미국 투자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청은 동 정보를 다시 미 조세당국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과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미국-대한민국 정부간 협정에서 정하는 보고제도를 준수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FATCA 를 준수하는 기관으로 처리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이 FACTA 를 준수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30%의 원천징수세가 미국원천소득으로부터 (혹은 미국원천소득에 기인하여) 혹은 미국 자산에 대하여 수령한 지급금에 대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다른 관할지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동 조세정보교환 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에 기초한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이 대한민국 법으로 시행되면, 이 투자신탁는 이러한 협약의 당사자인 관할지에 소재하는 직접적인 또는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간접적인 투자자에 대한 특정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국세청은 동 정보를 다시 해당 조세당국에 제공하게 됨). 상기한 바에 기초하여 이러한 보고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들은 특정 정보를 이 투자신탁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사들은 미국인의 펀드 수익권 소유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운용실적위험	**과거 운용실적은 과거의 운용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동성위험	투자대상국가의 유가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실행하는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 과정 및 현금 운용 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 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이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 년(법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 년(법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추가설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설정에 따른 자금유입은 기존 투자자들의 이익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규모위험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투자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 등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성과 및 가치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에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가청약연기 위험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청약이 어려워질 경우에 모집(판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공정가액산정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중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운용회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오류 위험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판매회사 등 관련 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법에서 정한 오차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가 산정 오류가 이러한 오차범위 이내에서 발생한 경우 당해 투자신탁을 청약하거나 환매한 투자자, 기존투자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제적 가치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 등 제도적 위험	국내외 법률, 조세 및 규제 등의 정책이나 제도변경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용프로세스 위험	운용회사는 일반적으로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운용사에게 부여된 임의재량에 의한 투자활동의 결과는 운용회사의 능력에 좌우되고 특히 적절한 투자기회를 식별하고 성공적으로 투자전략을 이행하는 펀드매니저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당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다수의 다른 투자신탁의 운용을 담당할 수 있고, 담당 펀드매니저의 퇴직 등으로 신탁계약기간 도중에 담당 펀드매니저가 변경될 위험이 있습니다.
증권대차 거래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 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5 등급(낮은위험)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 년간 펀드의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97.5% VaR 모형 사용) : **6.96%]**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의 경제 등의 여건 변화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 등으로 표시된 채권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

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의 투자성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종류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은 과거 3 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60}$)을 곱하여 산출한 97.5% 신뢰수준의 VaR(Value at Risk) 모형을 사용합니다.

※ iM 에셋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97.5% VaR 모형 사용)

등급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2 등급 높은 위험	3 등급 다소 높은 위험	4 등급 보통위험	5 등급 낮은 위험	6 등급 매우 낮은 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주 1) 상기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iM 에셋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 투자위험등급을 분류 하였습니다. 따라서, 판매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 2) 수익률 변동성 기준이란 설정 후 3 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과거 3 년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60}$)을 곱하여 산출한 97.5% 신뢰수준의 VaR(Value at Risk) 모형을 사용합니다.

주 3)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 값 OO%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 년간 일간 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OO%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 :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각 종류별 가입가격은 제 2 부. 6. 나. 종류형 구조 중 수익증권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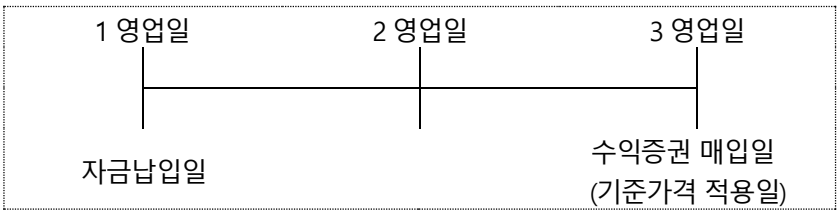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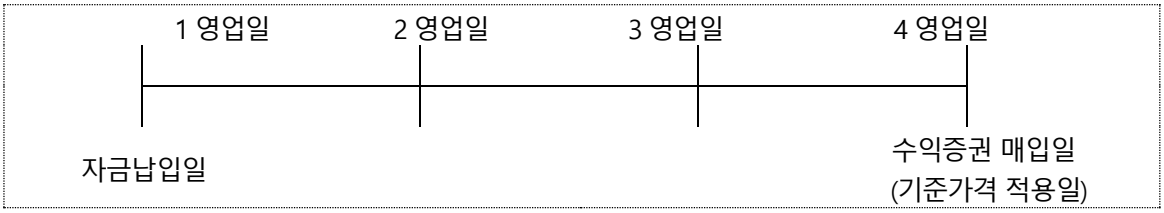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운용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증권의 추가청약이 어려워질 경우에 모집(판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판매수수료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각 종류별 수수료는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17시[오후 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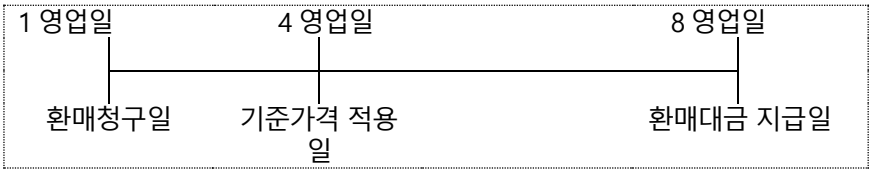

② **17시[오후 5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영업일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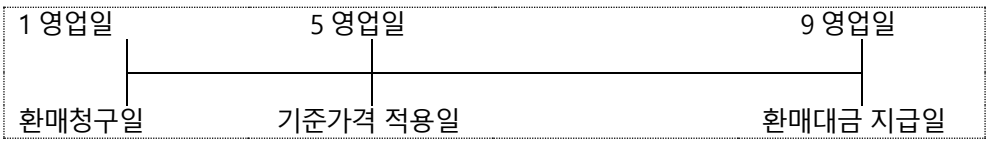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개별적인 매입 또는 환매청구없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가 처리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 이전에 매입 또는 환매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외국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계좌로 환매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일 당일 17 시[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6 영업일 전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한 경우 7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따른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규약과 법령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 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57 조제 1 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a. 현저한 거래부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b. 당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c.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 등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d.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유
   a.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b.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c.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상기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7)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집합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8)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환매가능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 허용
	-	-	O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당해 투자신탁은 법 제 231 조에 의거하여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im-fund.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 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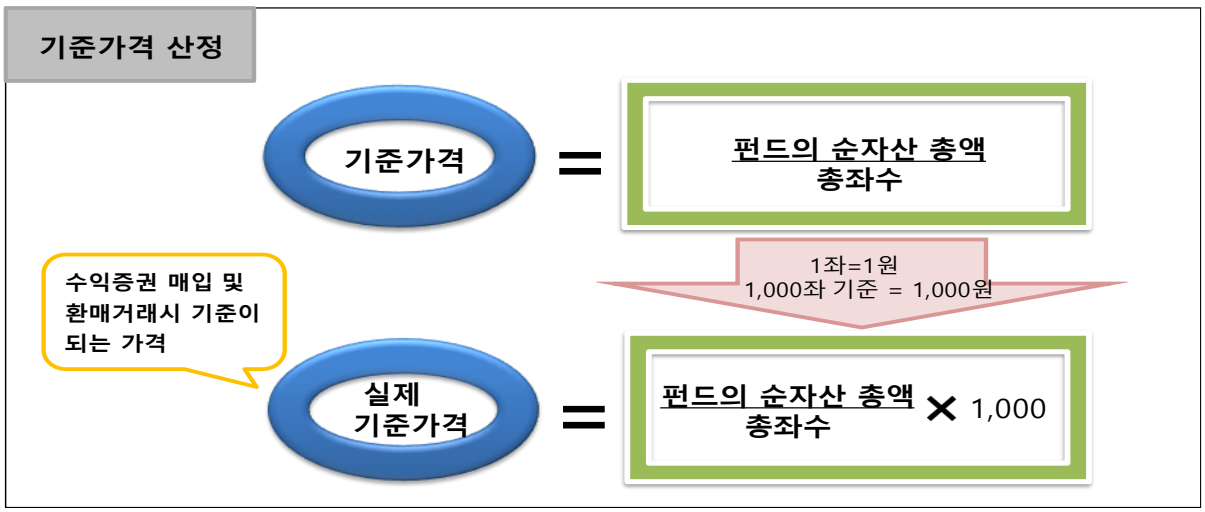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당해 투자신탁 및 피투자집합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당해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해서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은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가격
비상장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상장채권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개월간 계속해서 매월 10 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되지 못한 상장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한 가격.
외화표시 상장주식 / 외화표시 상장채무증권	당해 투자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당해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실물자산 등	"실물자산 등" 이란 부동산, 실물자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지분증권 및 관련 채무증권 등을 의미한다. 부동산, 실물자산, 실물자산 등 관련 지분증권, 실물자산 또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채무증권(대출채권을 포함) 등에 관하여 시가 또는 기준 신용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실물자산 등을 취득한 후 1 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 1 년마다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외화표시자산을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외화로 표시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제공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제공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가격 계산시 그 평가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정가격이 없거나 공정가격 산정이 곤란한 자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의 종합의사결정기구로서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합니다.

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위원장: 대표이사 위 원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부서장, 리스크관리담당부서장,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회의 주무부서는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합니다.
소관사항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수익증권의 종류에 따른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부담비율(연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7%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35% 이내(주1)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전자매체(온라인)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보유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기관투자자 및 기금, 최초 납입금액이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0억 이상 법인, 판매회사 특정금전신탁, 집합투자기구 및 변액보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없음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주2)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형-고액(S-i)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종류 S-T 및 종류 S-P 수익증권 포함)을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최초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투자자에 한하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판매회사의 전자매체(온라인)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 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해당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2) 후취판매수수료율은 3 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내용

구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증권거래비용

									보수 포함)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0.39	0.60	0.04	0.02	1.0500	0.0094	1.0594	0.87	1.3694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0.39	1.00	0.04	0.02	1.4500	0.0088	1.4588	1.17	1.7688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0.39	0.85	0.04	0.02	1.3000	0.0090	1.3090	0.74	1.6190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0.39	0.00	0.04	0.02	0.4500	0.0091	0.4591	-	0.7691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0.39	0.30	0.04	0.02	0.7500	-	0.7500	-	1.060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0.39	0.60	0.04	0.02	1.0500	0.0094	1.0594	-	1.3694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39	0.02	0.04	0.02	0.4700	-	0.4700	-	0.7800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0.39	0.19	0.04	0.02	0.6400	0.0073	0.6473	-	0.9573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0.39	0.16	0.04	0.02	0.6100	0.0071	0.6171	-	0.9271	0.00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39	0.20	0.04	0.02	0.6500	0.0089	0.6589	0.57	0.9689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형-고액 (S-i)	0.39	0.012	0.04	0.02	0.4620	-	0.4620	-	0.772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0.39	0.50	0.04	0.02	0.9500	0.0092	0.9592	-	1.2692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0.39	0.30	0.04	0.02	0.7500	0.0073	0.7573	-	1.0673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0.39	0.25	0.04	0.02	0.7000	0.0097	0.7097	-	1.0197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0.39	0.90	0.04	0.02	1.3500	-	1.3500	-	1.6600	-
부담시기	매 3 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을 의미하며, 기타비용 비율은 해당 기타비

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합니다. 기타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직전회계년도: 2025.09.08.~2026.09.0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을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을 약 연 **0.31**%(피투자펀드의 운용보수는 연 0.31%이며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를 포함한 기타비용은 제외)으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년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회계년도: 2025.09.08.~2026.09.07]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은 기 설정된 종류 수익증권의 기타비용 비율을 예상치로 사용하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5) 수익자는 증권거래비용, 기타 관리비용 등 총보수・비용 이외에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작성기준 2026.)

주7)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최초설정일부터 2022년 07월 24일까지는 0.025%(연간), 2022년 07월 25일 이후는 0.02%(연간)으로 적용합니다.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부동산관리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621

※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

※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 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 1,000 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 천 원)

종류	투자기간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8	290	406	653	1,35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9	354	503	819	1,712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2	173	246	402	8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4	237	344	571	1,2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0	304	464	802	1,75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1	368	561	966	2,09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4	273	417	722	1,58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66	337	515	887	1,9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7	96	148	258	57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9	161	247	429	9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7	157	241	418	9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9	222	339	587	1,2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9	221	339	587	1,29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40	286	436	754	1,6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8	99	151	264	59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80	163	250	435	96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6	136	208	362	80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8	200	306	532	1,17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3	129	198	345	77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5	194	297	515	1,14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형-고액 (S-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7	97	149	259	5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9	162	248	430	9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98	201	307	533	1,18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30	265	405	700	1,54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	159	243	422	94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9	223	341	591	1,3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3	149	228	396	88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5	213	326	566	1,25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C-G)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8	282	430	744	1,63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0	346	527	909	1,978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단 3 년 미만 환매시 발생하는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매매이익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6 년 12 월 21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 다음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세율 및 과세대상 금액 포함)은 일반적으로 모든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내용을 참고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향후 관련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중도 해지 시 적용 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매사와도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①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인 판매사가 수익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시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③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①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②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 이자, 주식 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수익

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일반법인 15.4% (법인지방소득세 포함)

①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②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종류 C-p 및 S-p)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 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이라 함) 한도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 (지방소득세 포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1월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과세 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 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통상적인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의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6기(2025.09.08 - 2026.09.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5기(2024.09.08 - 2025.09.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4기(2023.09.08 - 2024.09.07)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6기	제 15기	제 14기
	(2026.09.07)	(2025.09.07)	(2024.09.07)
운용자산	5,320,099,280	7,801,092,481	8,175,490,909
증권	4,606,689,975	7,487,777,281	7,583,083,828
파생상품	133,544,622	-28,200,887	251,539,941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579,864,683	341,516,087	340,867,140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6,649,986	9,727,487	10,102,739
자산총계	5,326,749,266	7,810,819,968	8,185,593,648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4,144,491	20,693,415	2,384,855
부채총계	14,144,491	20,693,415	2,384,855
원본	4,647,161,897	6,993,966,525	7,659,749,030
수익조정금	-372,329,771	-50,486,664	65,269,997
이익잉여금	1,037,772,649	846,646,692	458,189,766
자본총계	5,312,604,775	7,790,126,553	8,183,208,793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6기	제 15기	제 14기
	(2025.09.08 - 2026.09.07)	(2024.09.08 - 2025.09.07)	(2023.09.08 - 2024.09.07)
운용수익	203,689,808	379,305,764	825,581,923
이자수익	6,032,717	5,764,903	3,661,312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197,657,091	373,540,861	821,920,611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478,863	600,318	735,51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478,863	600,318	735,510
당기순이익	203,210,945	378,705,446	824,846,413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재무정보상의 재무상태표"와 "감사(BSPL)상의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4)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5)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제 16 기 0 백만원 발생, 제 15 기 0 백만원 발생, 제 14 기 0 백만원 발생)

(주 6)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제 16 기 0 백만원 발생 , 제 15 기 0 백만원 발생, 제 14 기 0 백만원 발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5.09.08 - 2026.09.07)			전기(2024.09.08 - 2025.09.07)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합계	0	0	0	0	0	0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	32.58

(주 1)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주 2)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활용합니다. (기준일 : 2026.09.1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70	78	21	24	45	51	46	53
2024.09.08 - 2025.09.07	77	81	12	13	19	20	70	78
2023.09.08 - 2024.09.07	92	89	8	8	23	23	77	8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가. 종류형펀드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18	19	0	0	10	11	8	8
2024.09.08 - 2025.09.07	17	18	2	3	2	2	18	19
2023.09.08 - 2024.09.07	25	23	0	0	8	7	17	18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3	3	0	0	1	1	2	2
2024.09.08 - 2025.09.07	4	4	0	0	2	2	3	3
2023.09.08 - 2024.09.07	5	5	0	0	1	1	4	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1	2	0	0	1	1	1	1
2024.09.08 - 2025.09.07	2	2	0	0	0	0	1	2
2023.09.08 - 2024.09.07	2	2	0	0	0	0	2	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2	2	13	13	12	13	2	2
2024.09.08 - 2025.09.07	0	0	2	2	0	0	2	2
2023.09.08 - 2024.09.07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11	11	0	0	4	4	7	8
2024.09.08 - 2025.09.07	12	12	0	0	1	1	11	11
2023.09.08 - 2024.09.07	13	12	1	0	2	2	12	1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0	0	0	0	0	0	0	0
2024.09.08 - 2025.09.07	0	0	0	0	0	0	0	0
2023.09.08 - 2024.09.07	0	0	0	0	0	0	0	0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1	1	0	0	0	0	0	0
2024.09.08 - 2025.09.07	2	2	0	0	1	1	1	1
2023.09.08 - 2024.09.07	2	2	0	0	0	0	2	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3	4	0	0	1	1	2	3
2024.09.08 - 2025.09.07	4	4	0	0	1	1	3	4
2023.09.08 - 2024.09.07	4	4	0	0	1	1	4	4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13	14	3	4	11	11	6	6
2024.09.08 - 2025.09.07	16	16	2	2	4	4	13	14
2023.09.08 - 2024.09.07	18	16	2	2	5	4	16	16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1	1	1	1	1	1	1	1
2024.09.08 - 2025.09.07	2	2	1	1	2	2	1	1
2023.09.08 - 2024.09.07	2	2	0	0	0	0	2	2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5.09.08 - 2026.09.07	23	22	5	5	7	8	20	20
2024.09.08 - 2025.09.07	24	23	6	5	7	7	23	22
2023.09.08 - 2024.09.07	26	22	5	5	7	6	24	23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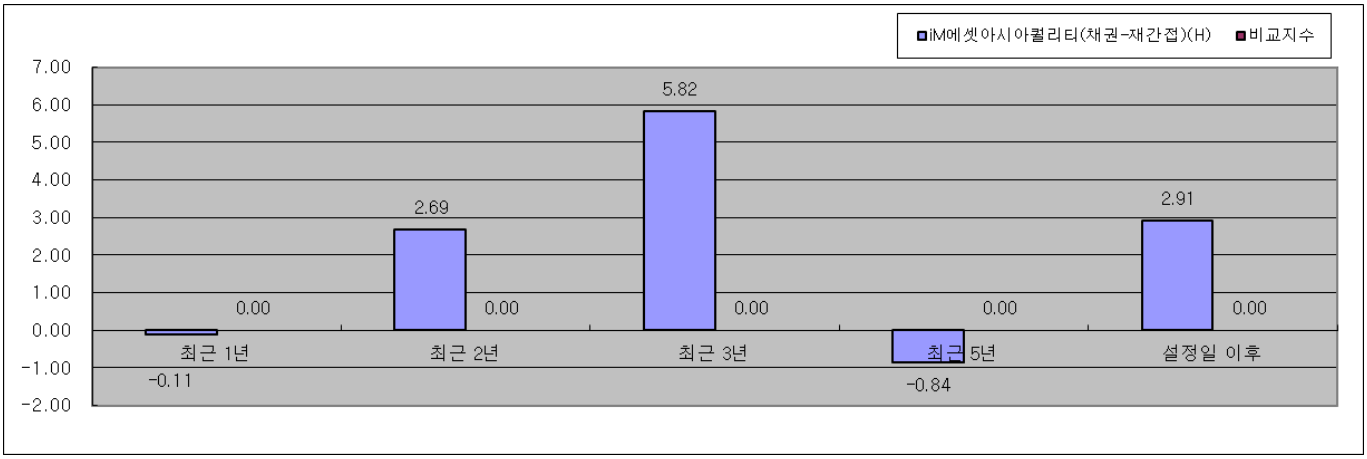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02 ~ 26.10.01	24.10.02 ~ 26.10.01	23.10.02 ~ 26.10.01	21.10.02 ~ 26.10.01	10.09.08 ~ 26.10.01
iM에셋아시아퀄리티(채권-재간접)(H)	-0.11	2.69	5.82	-0.84	2.91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0.00
수익률변동성(%)	2.28	3.14	3.37	4.84	5.10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1.15	1.62	4.72	-1.88	1.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1.54	1.22	4.31	-2.27	1.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1.40	1.37	4.47	-2.12	1.5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0.46	-1.05	3.17	-2.49	0.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1.15	1.62	4.72	-1.88	1.1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0.74	2.04	5.15	-1.48	1.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0.71	2.07	5.18	-1.45	1.49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5.10.02 ~ 26.10.01	24.10.02 ~ 26.10.01	23.10.02 ~ 26.10.01	21.10.02 ~ 26.10.01	10.09.08 ~ 26.10.01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76	2.02	5.14	-1.49	1.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1.05	1.72	4.83	-1.78	0.4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0.85	1.92	5.04	-1.58	-0.1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0.81	1.97	5.09	-1.54	-0.14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3 년 1 월 4 일까지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90%) + (Call × 10%)]를 사용하며, 2023 년 1 월 5 일부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사용합니다.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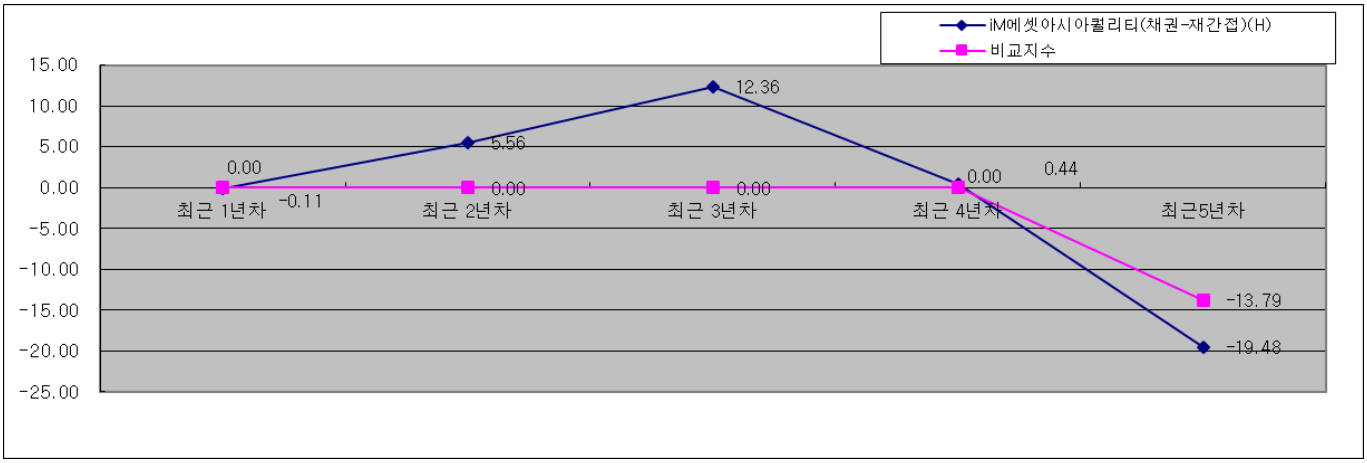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5.10.02 ~ 26.10.01	24.10.02 ~ 25.10.01	23.10.02 ~ 24.10.01	22.10.02 ~ 23.10.01	21.10.02 ~ 22.10.01
iM에셋아시아퀄리티(채권-재간접)(H)	-0.11	5.56	12.36	0.44	-19.48
비교지수	0.00	0.00	0.00	0.00	-13.79
수수료선취-오프라인형(A)	-1.15	4.47	11.21	-0.61	-20.3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1.54	4.05	10.77	-1.00	-20.6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1.40	4.21	10.94	-0.85	-20.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형(Cw)	-0.46	-1.63	12.13	0.12	-19.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형(C-p)	-1.15	4.46	11.21	-0.61	-20.3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형(S)	-0.74	4.90	11.65	-0.20	-20.01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5.10.02 ~ 26.10.01	24.10.02 ~ 25.10.01	23.10.02 ~ 24.10.01	22.10.02 ~ 23.10.01	21.10.02 ~ 22.10.0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형(S-p)	-0.71	4.92	11.69	-0.17	-19.98
수수료선취-온라인형(A-e)	-0.76	4.88	11.65	-0.21	-20.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형(C-Rp)	-1.05	4.57	11.32	-0.51	-20.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형(C-Pe)	-0.85	4.78	11.54	-0.31	-20.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형(C-Rpe)	-0.81	4.83	11.59	-0.26	-20.05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23 년 1 월 4 일까지 [(JP Morgan Asia Credit Index × 90%) + (Call × 10%)]를 사용하며, 2023 년 1 월 5 일부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사용합니다.

(주 2) 연도별 수익률은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또한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임의로 정해진 기준일을 기점으로 산출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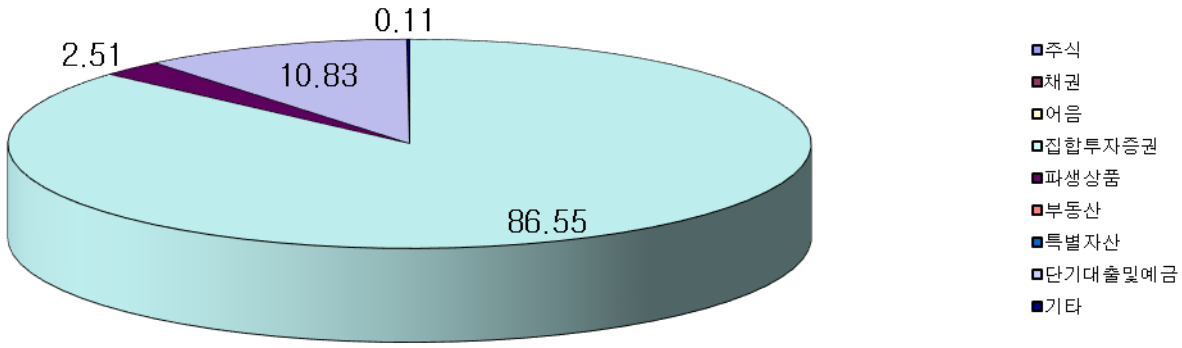

[2026.09.07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4	0	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8.66)	(1.34)	(8.00)
USD	0	0	0	46	0	1	0	0	0	1	0	49
	(0.00)	(0.00)	(0.00)	(94.54)	(0.00)	(2.74)	(0.00)	(0.00)	(0.00)	(2.72)	(0.00)	(92.00)
합계	0	0	0	46	0	1	0	0	0	6	0	53
	(0.00)	(0.00)	(0.00)	(86.55)	(0.00)	(2.51)	(0.00)	(0.00)	(0.00)	(10.83)	(0.11)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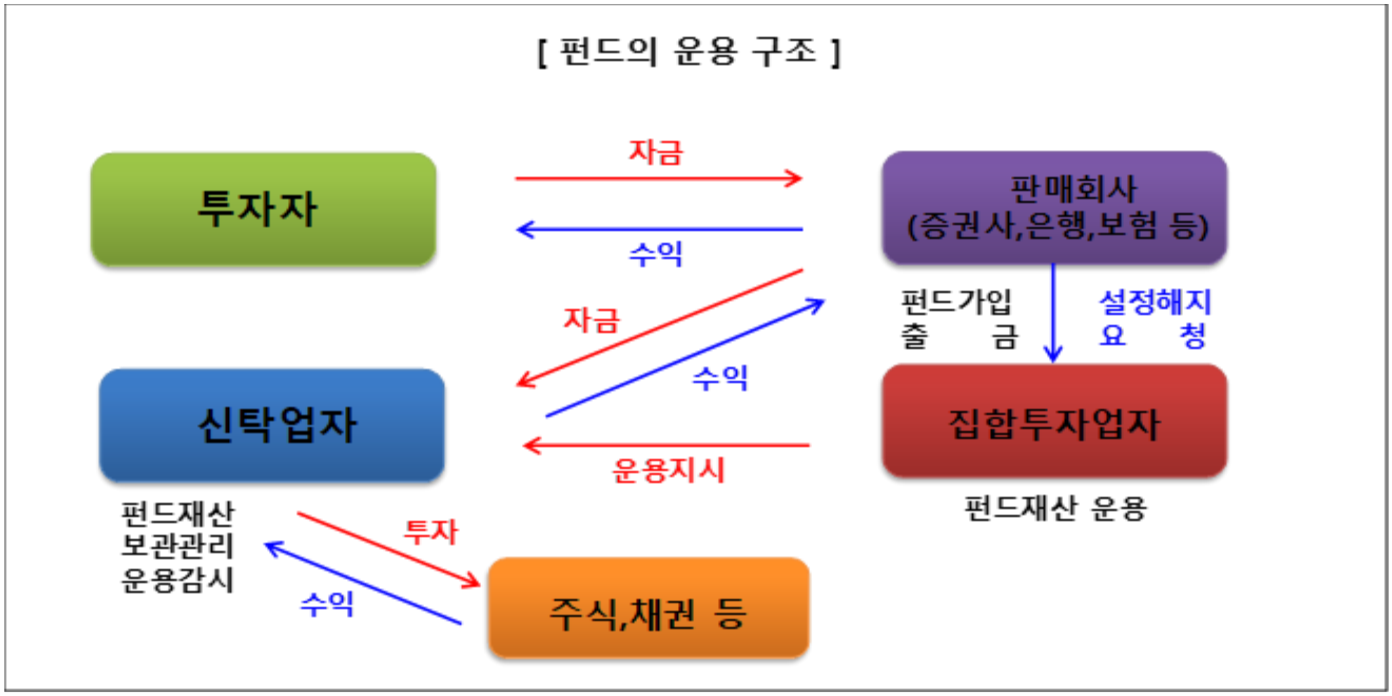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iM 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 층 (☎ 02-707-4200, www.im-fund.com)
회사 연혁	2000.03. 델타투자자문 설립 2008.08. 자산운용회사 전환 2008.08. LS자산운용㈜ 상호 변경 2016.10.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DGB자산운용㈜ 사명 변경 2021.08. 하이자산운용㈜ 사명 변경 2021.10 블랙록자산운용㈜ 국내 공모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2024.06 ㈜iM에셋자산운용 사명 변경
자본금	191.7 억원
주요주주현황	주식회사 아이엠금융지주 (100%)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 그 밖에 법 시행령이 정하는 업무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5.12.31	2024.12.31	계정과목	2025.1.1~ 2025.12.31	2024.1.1~ 2024.12.31
현금및예치금	18,902	20,330	영업수익	25,582	23,832
유가증권	51,116	50,774	영업비용	15,519	13,400
대출채권	229	233	**영업이익**	**10,063**	**10,432**
유형자산	635	1,166	영업외수익	37	24
기타자산	8,428	7,846	영업외비용	31	51
자산총계	**79,310**	**80,350**	경상이익	10,069	10,404
기타부채	8,002	13,176	법인세비용	1,934	1,693
부채총계	**8,002**	**13,176**	**당기순이익**	**8,135**	**8,711**
자본금	19,173	19,173			
자본잉여금	30,968	30,96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	21,167	17,032			
자본총계	**71,308**	**67,173**			

라. 운용자산 규모

[2026.10.01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01	17,977	1,521	0	7,676	6,885	0	1,948	4,134	284	29,216	69,942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37 (☎ 02-2004-0000)
홈페이지	www.hsbc.co.kr

나. 주요업무

(1)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금・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다. 의무

(1)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3)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및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라. 책임

(1)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1) 최초설정일부터 2022 년 07 월 24 일까지

회사명	(주) 코스콤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 길 21 (☎ 02-3771-9800)
홈페이지	www.koscomfund.co.kr

(2) 2022 년 07 월 25 일부터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 길 28 18,19,20 층 (☎ 02-2180-0400)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나. 주요업무

(1) 기준가격의 산정업무
(2) 기준가격의 통보업무

다. 의무와 책임

(1)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나이스피앤아이㈜	이지자산평가㈜	한국자산평가㈜	KIS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CCMM빌딩3층 (☎ 02-785-141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 02-3215-1400)
홈페이지	www.nicepni.com	www.egap.co.kr	www.koreaap.com	www.bond.co.kr

나. **주요업무**

(1) 채권평가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 제공합니다. 채권평가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②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③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2) 채권평가회사는 증권평가기준을 협회와 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이 공시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그 수정내용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집합투자자총회(또는 "수익자총회"라 함)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회사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수익자에 대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위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법시행령 제217조 제3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 188 조제 2 항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함)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건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③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같다)을 최초로 설정한 후 1 년(법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④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법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3 항 내지 4 항에 의거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법시행령 제 81 조 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업무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재무상태표
  ② 손익계산서
  ③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⑥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⑦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⑧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⑩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만, 회계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종료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⑪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⑫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④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⑤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⑥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ㄱ.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ㄴ.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 230 조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ㄷ.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③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④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⑤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⑥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⑧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행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 (www.im-fund.com)・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및 법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다.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변경하는 경우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이 설정 이후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해당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시행령 제81조 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합니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③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원칙	1. 회사는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조사분석서비스의 이용대가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1.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 ① 시장 정보의 정확성 및 적시성 ② 세미나 및 리서치 제공 ③ 발행 등 시황의 유용성 ④ 호가 경쟁력, 호가 대응 신속성 및 체결율 ⑤ 결제 프로세스의 정확성 2.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 ① 리서치 제공 능력 ② 매매 실행 능력 ③ PT 및 세미나 ④ 기업 탐방 ⑤ 시장 정보 제공

주 1)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지닌 것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금융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액티브(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별첨 2]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등록요건과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미 등록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이므로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과 해당 피집합투자기구 판매회사의 영업점을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일반위험	각 펀드의 성과는 기초 자산의 성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펀드나 투자의 투자목적이 달성되리라 보장이나 진술은 없으며 과거 실적이 반드시 미래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펀드주식의 가치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투자자는 원본을 회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펀드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변동할 수 있으며, 특히 환율변동으로 인해 펀드주식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과세 수준과 과세 기준 및 조세감면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펀드의 기초 투자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전반적인 성과가 수익성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설립되는 시점에서 해당 하위펀드는 통상 장래의 투자자들이 실적평가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운용경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시장, 거래상대방 및 업무수탁자들 위험	이 투자회사를 운용·관리하는 회사들은 금융계약에 있어서 서비스 공급자 또는 그 상대방으로 행위하는 금융권 회사들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상당한 변동성이 초래되는 경우 이와 같은 금융권 회사들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결국 이 투자회사의 운용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 자율규제기관, 거래소는 시장위기 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감독조치가 이 투자회사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이자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펀드는 최초주식공모 또는 신규발행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최초주식공모 또는 신규발행채권의 대상인 증권의 가격은 이미 발행된 증권보다 가격 변동이 더 크고 예측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대상의 가치 및 투자로부터의 수익은 상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습니다.
세금 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회사에는 소득과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투자회사가 증권에 투자하면서 취득단계에서 원천징수 또는 다른 세금의 부과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법, 조약, 규정 또는 그 해석의 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회사는 그러한 세금부과에 대한 전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법의 제정, 본 회사의 과세상 지위, 주주에 대한 과세 및 모든 조세감면, 이러한 과세지위 및 조세감면을 받는지 여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판매된 또는 투자된 사법관할에서 세법이 개정되면 하위펀드의 과세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사법관할 내에서 하위펀드의 투자가치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펀드가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주주에 대한 세후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위와 같은 사항은 해당 파생상품 계약 또는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사법관할 또는 파생상품의 기초상품이 노출되는 시장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조세감면 혜택의 제공여부와 금액은 주주들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신고서에서 가능한 모든 상황을 예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내용이 법률자문이나 세무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개별적인 세무상황과 본 회사의 투자가 초래하는 조세 결과에 대하여 각자의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이 권장됩니다. 하위펀드가 조세시스템이 선진화되지 않았거나,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동지역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하위펀드, 관리회사, 투자자문회사, 보관회사는 본 회사 또는 하위펀드에 부과된 세금 기타 부과금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할 조세 당국에 납부 하였으나, 나중에 그러한 지급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이러한 지급에 대하여는 주주들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세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시장 관행(확립된 모범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또는 세금과 관련한 실질적이고 시의적절한 납세시스템이 부족하여, 관련 하위펀드가 납기일이 지난 이후 이전 연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이와 관련된 이자 및 가산금은

	해당 하위펀드가 부담하게 됩니다. 납기 후 납부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하위펀드의 계정에 채무를 발생시키기로 결정한 순간에 해당 하위펀드에서 차감됩니다. 주주들은 어떤 주식클래스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주주들은 전보다 많은 배당금을 받게되어 그 결과 높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펀드가 이익금이 아닌 자본금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배당금은 여전히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으로 간주되어 현지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고, 주주들에게 한계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은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세자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 세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중국의 경제가 변화되고 발전하면서, 변화되고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권위있는 지도가 부족하며, 세금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좀 더 발전된 시장과 비교해 볼 때 덜 통일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금 관련 법령, 규정 및 해석은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세금 규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경우 이 투자회사와 투자자들에게, 특히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원천징수로 인하여 자본증식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식클래스간 연대채무 위험	이사들은 특정 주식클래스에서 발생한 제반 손익이나 비용은 해당 주식클래스가 부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식클래스 간에는 채무가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 어느 주식클래스와 관련된 거래가 동일 하위펀드내 다른 주식클래스의 순자산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 기준통화	펀드는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준통화와 투자자산의 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기준통화로 표시되는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게 됩니다. 펀드는 환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헷징 목적을 포함한 파생상품과 관련된 기술과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펀드의 포트폴리오 또는 특정 포트폴리오 자산의 환위험을 완전히 상쇄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펀드의 투자방침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투자자문회사는 환위험을 경감시켜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통화위험 - 주식클래스 통화	일부 펀드의 주식클래스는 해당 펀드의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펀드는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펀드의 투자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화위험 – 투자자의 고유 통화	투자자는 투자자의 자산부채가 표시되는 통화("투자자의 고유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주식클래스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통화위험 및 해당 펀드 투자에 수반되는 다른 위험에 추가하여 투자자의 고유통화와 해당 투자자가 투자하는 주식클래스 표시통화간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손실 위험이 존재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위기와 정부개입	2007 년 이래 글로벌 금융시장은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교란을 겪어 왔으며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정부개입을 야기하였습니다. 많은 관할지의 감독기관들은 여러 가지 위기 조치를 실행하거나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감독기관의 개입은 때로 그 범위와 적용여부가 불분명하여 혼란과 불명확성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자체로 금융시장의 효과적인 기능을 저해해 왔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대하여 어떠한 임시 혹은 영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할 지 및/또는 투자자문회사가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는데 그러한 제한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각국 정부의 현재 혹은 장래의 약정이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투자자문회사들은 금융시장이 이러한 사유의 영향을 얼마나 더 오래 받게 될 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 혹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펀드, 유럽 경제, 글로벌 경제, 그리고 글로벌 증권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미치게 될 지 확실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정부개입은 각 펀드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가치의 손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 – 일반사항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제한' 에서 정한 투자한도 및 제한에 따라 각 펀드는 시장, 금리 및 통화 위험을 헷지하고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펀드는 높은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위험에는 펀드와 거래를 체결하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결제 불이행 위험, 파생상품 유동성 부족, 파생상품 가치 변동과 해당 펀드가 추적하고자 하는 기초자산 가치 변동 간 불완전한 추적관계,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 비해 더 큰 거래비용 발생 위험이 포함됩니다. 파생상품 매입 시 펀드는 업계 표준관행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 이행을 보장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전액 조달되지 않는 방식의 파생상품(non-fully funded derivatives)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최초 및/또는 변동 증거금 자산을 예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펀드가 최초 증거금 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예탁하여야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이러한 자산은 거래상대방의 고유자산과 분리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전환되거나 대체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거래상대방에게 예탁된 최초 증거금 자산 대신 이에 상응하는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탁금이나 자산은 거래상대방이 초과

	증거금이나 담보를 요구할 경우 해당 펀드가 거래상대방에게 지는 채무 가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파생상품 조건은 최소 이전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한 변동 증거금 익스포저를 부보할 수 있는 담보를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펀드는 이러한 최소 이전금액 한도 내에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파생상품에 따른 무담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계약은 상당히 변동성이 높고 최초 증거금 금액이 계약의 규모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거래가 쉽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채권 또는 주식 거래에 비하여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의 변동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된 파생상품 포지션은 펀드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펀드는 레버리지를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는 없으나,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제한'에 명시된 투자제한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파생상품을 통해 합성 매도초과 포지션을 취함으로써 익스포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펀드는 선도환을 포함한 선물 포지션과 같은 파생상품(합성 매도 포지션)을 활용하여 매수초과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에 따르는 추가 위험으로 거래상대방이 담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상의 문제로 인하여 (위험 익스포저를 산정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교체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담보를 매각하는 시점 간 시차가 존재하는 등) 파생상품 계약에 따른 펀드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의 투자제한을 계속하여 준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활용으로 인하여 펀드는 법률 개정이나 예기치 못한 법령 적용으로 인하여 혹은 법원의 계약 집행불가 판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하게 될 경우 하위펀드의 전반적인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관리회사로 하여금 포지션 위험 및 이러한 포지션이 펀드의 전반적인 위험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하고 측정하도록 하기 위해 이 투자회사는 위험관리절차를 활용합니다. 관리회사는 각 하위펀드의 총위험평가액 산정을 위해 최대손실 가능금액(Value at Risk, VAR) 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제 2 부의 내용중 '투자제한'에 기재된 투자제한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각 펀드가 활용하는 파생상품 전략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에 기재된 하위펀드의 투자목적과 최근 위험관리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험관리문서는 요청시 현지 투자자 서비스팀으로부터 입수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펀드는 증권대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시 펀드는 증권대여계약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펀드는 일정 기간 투자자산을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하고 담보물의 가치가 대여증권의 가치를 하회하게 될 경우, 펀드의 가치 하락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회사는 모든 증권대여가 담보부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지만, 대여증권에 대하여 100% 담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경우 (지급시기 차이로 인한 시차 발생 등) 펀드는 증권대여 계약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펀드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에 노출되며 결제 불이행 위험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이란 금융상품의 거래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나 해당 펀드와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파생상품, 환매/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또는 증권대여계약의 거래상대방 위험이 이러한 위험에 포함됩니다. 담보가 수반되지 아니한 파생상픔 거래는 직접적인 거래상대방 익스포저를 발생시킵니다. 해당 펀드는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에 상응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가치를 가진 담보를 수령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상당 부분 경감시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이 완전히 담보화되지 아니한 경우 거래상대방의 불이행 발생시 펀드의 가치 하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래상대방 각각에 대한 정식 검토 절차가 이루어지며 모든 승인된 거래상대방은 계속적으로 모니터되고 검토됩니다. 펀드는 거래상대방 익스포저와 담보관리 절차를 적극적으로 감독합니다.
보관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	이 투자회사의 자산은 보관회사에게 안전하게 보관 위탁됩니다. 이 투자회사의 자산은 보관회사의 장부상 이 투자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되며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증권은 보관회사의 다른 증권/자산과 독립적으로 보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보관회사의 파산시 미반환 위험을 경감시킬 수는 있어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보관회사의 파산시 투자자는 보관회사가 이 투자회사의 모든 자산을 반환할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어느 펀드의 현금은 보관회사의 고유 현금 / 보관회사가 보관중인 타 고객의 현금과 독립적으로 보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관회사의 파산시 펀드가 무담보 채권자로 등재될 위험이 있습니다. 보관회사가 이 투자회사의 모든 자산을 보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하위 보관회사 네크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위 보관회사가 반드시 보관회사와 동일 그룹사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위 보관회사의 파산시 투자자는 보관회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보관시스템이나 결제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은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거래되어 상기한 하위 보관회사에 예탁된 펀드의 자산은 보관회사가 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펀드 채무 위험	이 투자회사는 하위펀드 간 채무가 분리되는 엄브렐라형 구조를 가집니다. 룩셈부르크 법 상 어느 하위펀드의 자산은 다른 하위펀드의 채무 변제에 충당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투자회사는 단일 법인으로 운영되거나 단일 법인으로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채무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는 타 관할지에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증권신고서 일자 현재 상기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사들이 알고 있는 현재 혹은 장래의 불확정 채무는 없습니다.
시장 레버리지	펀드는 투자자산의 추가 매입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지 아니하나 파생상품 포지션을 통해 시장 레버리지(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총 시장 익스포저, 롱포지션 및 합성숏포지션 합산 익스포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문회사는 시장의 절대 수익에 대한 방향성 견해("이 시장은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이다")로부터 뿐 아니라 시장 사이의 상대적인 가치 차이("이 시장이 저 시장 보다 더 낫다")로부터 절대적인 수익을 얻고자 합니다. 시장 레버리지는 포지션들 간 상관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시장 레버리지의 가능성과 그 정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환매/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경우 펀드는 거래상대방에게 증권을 매각하는 동시에 합의된 가격과 일자에 당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동 증권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합니다. 매도가격과 재매입 가격 간 가격차가 거래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재매도 가격은 통상 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합의된 시장 이자율을 반영한 금액만큼 매매가격을 상회하게 됩니다.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경우 펀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권을 매입하는 반면 거래상대방은 미래의 합의된 일자에 합의된 재매도 가격으로 펀드로부터 동 증권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합니다. 이에 따라 펀드는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시 기초증권의 매도가격과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펀드가 보유한 기타 담보가액을 합한 금액이 시장 변동으로 인하여 재매입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당 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될 때까지 시 또는 거래상대방이 증권 재매입 권한을 행사할 때까지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대상이 되는 증권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기타 위험	개별 펀드는 불분명한 법률, 법률의 변경, 효과적인 법적 구제수단의 부재 등의 법률위험, 테러위험, 일부 국가의 경제적, 외교적 위험, 군사적 조치 등의 통제불가능한 위험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의 영향은 경제상황과 시장의 유동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 자율기관 및 거래소는 시장에 긴급한 상황의 발생시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감독기관의 조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및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채권	채권은 실제 및 인지된 신용평가를 받습니다. 근본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채권이 "신용평가 하향조정"을 받거나 또는 불리하게 공지되고 투자자간에 불리한 인식이 발생하는 경우 동 증권의 가치 및 유동성은 특히 거래량이 빈약한 시장에서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부 시장상황에서 증권의 유동성이 낮아져 매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비투자 등급의 채권 발행인은 레버리지가 높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습니다. 펀드는 해당 이자율 변동 및 신용의 질에 대한 고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시장 이자율의 변동은 펀드의 자산가치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단기 증권의 가격은 장기 증권의 가격보다 이자율 변동에 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경제 침체는 발행인의 재무상태와 동 발행인이 발행한 투기등급 채권의 시장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칩니다. 발행인에게 발생하는 특정의 상황 전개, 특정의 사업전망에 대한 발행인의 대처불능 또는 추가 자금조달의 실패는 발행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발행인이 파산하는 경우 펀드는 손실을 경험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투자 등급의 채권은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보다 더 변동성이 심하며 그 결과 불리한 경제상황에 의하여 비투자 등급의 채권의 가격이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채권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거나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은 회사가 발행한 증권("부실채권")에 대한 투자 위험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투자는 투자자문회사가 해당채권의 공정한 가치라고 판단하는 것보다 상당히 다른 레벨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해당 채권의 발행인이 교환제의를 하거나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환제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거나 그러한 구조조정이 실제로 채택되거나 또는 그러한 교환제의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받은 증권이나 기타 자산이 투자시의 예상보다 낮은 잠재 가치나 이익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지는 시점과 그러한 교환제의나 구조조정이 완성되는 시점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간동안 부실채권에 대한 이자가 수령될 가능성이 없으며, 공정한 가치에 수렴할지 여부 및 교환제의나 구조조정이 완성될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잠재적 교환제의나 구조조정을 둘러싼 협상 중에 투자하는 펀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비용을 부담할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조세문제를 이유로 부실채권에 관하여

	가해지는 투자결정 및 조치에 대한 제한으로 인하여 부실채권에 대하여 실현되는 수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하위펀드들은 다양한 재무 또는 수익상 문제들을 겪고 있고 특이한 유형의 위험을 대표하는 발행인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가 약한 회사나 기관의 주식 또는 고정수익부 양도성 증권에 대한 펀드의 투자대상인 발행인들 중에는 상당한 자본을 필요로 하거나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발행인 또는 파산 또는 정리절차에 관련되어 있거나, 관련되었거나 또는 관련될 수 있는 발행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채무	정부채무란 정부 또는 그들의 기관이나 기구("정부기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정부채무는 높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채무 상환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은 정부채무의 만기 도래시 그 상환조건에 따라 해당 원금 및/또는 이자의 상환을 할 능력이 없거나 상환할 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원금 및 이자를 적시에 상환할 능력이 없거나 상환할 의사가 없게 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특히 정부기관의 현금유출입 상황, 외환보유고의 정도, 지급만기일에 충분한 외환의 이용가능성, 경제전체에 대한 채무상환부담의 상대적 규모, 국제통화단체에 대한 동 정부기관의 정책, 공동 통화 정책에 따라 정부기관에 부과된 제한, 동 정부기관이 받는 기타 제한 등이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 연체금액을 줄이는 데 있어 외국정부의 예상지출규모, 다자간 기관, 외국기관 등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정부, 다자간 기관 등이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상환의무가 있는 정부기관이 경제개혁을 집행하고/하거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며 의무를 적시에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그러한 개혁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만기가 도래한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제 3 자가 정부기관에 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약정이 취소될 수 있고 채무자인 동 정부기관이 자신의 채무를 적시에 상환할 능력 또는 의사를 더욱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기관은 자신의 정부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펀드를 포함한 정부채무의 채권자는 그러한 정부채무의 채무조정에 참여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채무의 채권자는 (i) 해당 펀드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정부채무 발행인의 일방적인 법적 조치나 대주단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따른 결정 등) 채무재조정(원리금의 감액 및 상환기일 조정 등) 및 (ii) 정부채무 발행인의 채무불이행이나 지연 시 가능한 법적 소구권의 제한(정부기관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회수를 위한 가능한 파산절차의 부재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이머징 및 자본시장은 통상적으로 경제발전 및/또는 자본시장 발전의 수준이 낮고 주가 및 통화의 변동성이 높습니다. 특히 경제/자본 시장 발전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를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하며 이러한 시장의 경우 아래에 기재된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머징 시장의 정부들은 경제의 민간부문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많은 개발도상국에 정치 사회적 불확실성이 상당정도 존재합니다. 이들 국가군 대부분에 공통된 또 다른 위험요소는 경제가 과중하게 수출에 의존하며 따라서 국제 무역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제 기반시설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으며 금융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점도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특정 국가에 있어 위험요소입니다. 불리한 사회 및 정치적 상황에서 정부는 수용, 몰수적 과세, 국유화, 무역타결 및 증권시장에 대한 개입과 외국투자제한 및 외환통제조치를 실시하여 왔으며 장래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외에도 일부 이머징 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 감사 및 재무 신고 관행은 선진국의 그것과 상당히 상이합니다. 성숙된 시장과 비교하여 일부 이머징 시장은 감독 정도, 규정의 집행 정도 및 투자자 활동(일정한 범주의 투자자들에 의한 중요한 내부자 정보에 근거한 거래와 같은 관행을 포함)에 대한 감시수준이 낮습니다. 이머징 시장에서 증권거래의 결제 관행은 선진국에서보다 더 큰 위험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회사는 자본금이 낮은 중개인과 거래상대방을 사용하여야 하고 일부 국가에서 자산의 보관과 등록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담보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경우 결제의 지연으로 인하여 투자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보관인은 룩셈부르그 법규에 따라서 모든 해당 시장의 상응하는 은행을 적절하게 선정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부 이머징 시장에서 등록기록원은 효과적인 정부 감독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행인으로부터 독립적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해당 펀드가 등록 문제로 인하여 손실을 부담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채권 등급하락 위험	펀드는 우량/투자등급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나 투자 시점 이후 채권의 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펀드가 투매를 피하기 위해 이를 계속 보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가 등급이 하락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펀드의 자본가치가 이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은 펀드의 수익률 또는 자본가치(혹은 양자)가 그로 인해 변동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	일부 국가는 펀드와 같은 외국 단체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제한을 부과합니다. 그 예로서 특정 국가들은 외국인이 투자하기 전에 정부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회사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금액을 제한하거나 또는 어떤 회사에 대하여 자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증권보다 불리한 조건을 갖는 동

회사의 특정 종목의 주식에만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일부 국가들은 국가 이익에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발행인이나 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회사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방식 및 그러한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는 펀드의 운영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국가에서 어떤 하위펀드는 처음에는 현지 중개인이나 기타 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도록 하고 추후에 동 펀드의 명의로 매수한 주식을 재등록 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등록이 적시에 이루어 질 수 없어서 펀드가 투자자로서의 특정 권리(배당을 받을 권리 또는 회사의 행위를 통지 받을 권리 포함)를 행사할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특정 펀드가 매수주문을 냈으나 추후 재등록시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허용된 량의 주식이 이미 청약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동 펀드가 해당 시점에서 원하는 투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특정 펀드가 외국인 투자자로서 투자이익, 자본 또는 증권매각대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에 관하여 일부 국가에서 상당한 제한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펀드에 가해지는 투자제한조치 뿐만 아니라 자본의 본국 송금 지연 또는 그러한 본국 송금에 요구되는 정부승인의 거부에 의하여도 동 펀드는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수의 국가들이 자국의 자본시장에 대한 간접적인 외국투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폐쇄형 투자회사의 설립을 승인하였습니다. 특정 폐쇄형 투자회사 주식은 때때로 그 순시장가치보다 할증된 시장가격으로만 취득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하위펀드가 폐쇄형 투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들은 동 펀드에 비례배분된 비용(관리수수료 포함)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동 폐쇄형 투자회사의 비용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인도와 중국 같은 일부 국가는 외국인의 역내 투자에 대하여 쿼터 제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산은 순자산가치에 할증액을 더한 시가로만 취득될 수 있으며 이러한 할증액은 궁극적으로 해당 펀드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는 특정 국가의 법령에 따라 별도의 투자회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설립할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투자
중국에 대한 투자는 특정의 추가 위험, 특히 증권의 거래자격과 관련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특정 중국 주식의 거래는 허가된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고, 그러한 주식에 투자된 자본을 투자자들의 본국으로 회수하는 것이 때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본의 유동성과 회수성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회사는 그러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UCITS 에 적당하지 않다고 종종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중국 증권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중국 증권 시장에 전부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위험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글로벌 이머징 시장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에서 보다 시장경제(market-oriented)로 전환되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경제체제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큰 손실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선진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준보다 더 높은 시장변동성, 적은 거래량, 정치 및 경제적 불안정성, 시장 폐쇄위험, 엄격한 외국환 통제 및 외국인투자방침에 대한 많은 제한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중국 경제 하에서는 상당한 정부 개입(국익에 민감한 회사 또는 산업에 대한 투자제한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 및 감독당국은 중국의 증권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제한을 부과하는 등 금융시장에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펀드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선진시장의 회사들보다 더 낮은 수준의 공시의무, 기업지배구조, 회계 및 보고기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펀드가 보유한 일부 증권에는 더 높은 거래비용 및 기타 비용, 외국인보유지분 제한, 원천징수세 또는 기타 조세의 부과 등이 수반될 수 있거나 유동성 문제가 있어 해당 증권을 합리적인 가격에 매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해당 펀드의 투자자산은 예기치 못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하위펀드의 투자 가치의 손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머징 시장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투자하는 펀드도 선진시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더 큰 손실 위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20 년간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성장해왔지만, 그 성장수준은 중국 경제의 지역별, 업종별로 상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률도 주기적으로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의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고 경제성장률을 제한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분권화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개혁 및 자국 경제발전을 위한 시장원리(market force) 채택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조치로 인하여 상당 수준의 경제성장 및 사회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앞으로도 이러한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계속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정책에 대한 조정 및 수정은 중국 증권시장에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해당 하위펀드 성과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해당 하위펀드의 변동성이 (중국에 대한 투자 정도에 따라)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가치의 손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위험
중국에서 일어날 수 있거나 중국에 관련된 정치 변동, 사회적 불안정 및 불리한 외교관계 발전 등으로 인하여 중국 A 주식 및/또는 중국 역내 채권 가격이 상당히 변동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법제
중국의 법제는 성문법과 그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 이전 법원의 판례는 참고 목적상 인용될 수 있을 뿐 선례구속성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1979 년 이후부터, 중국

	정부는 상법을 종합적으로 발전시켰고, 이에 외국인 투자, 기업 구조조정 및 기업지배구조, 상업, 조세 및 거래 등의 경제적 사안을 처리하는 법규를 도입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공표된 판례 및 그에 대한 사법해석이 적고, 그 성질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의 해석과 집행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법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중국의 규제 및 법 체계가 선진국만큼 발전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 외환관리국은 각자의 재량으로 규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이러한 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법제가 발전함에 따라, 그러한 법규의 개정 및 그에 대한 해석과 집행이 해당 펀드의 역내 사업이나 중국 A 주식 및/또는 중국 역내 채권 취득에 중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역내 및 역외 위안화 관련 환위험 중국의 법정 통화인 위안화는 현재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통화가 아니며 중국 정부의 외환 관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환전 및 위안화 환율 통제는 중국회사의 운영 및 재무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당 펀드가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한, 자금 및 기타 자산의 본국 송금에 대하여 중국 정부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되며, 이는 해당 하위펀드가 투자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합니다. RQFII 쿼터를 통한 거래를 제외하고 모든 펀드의 위안화 거래에 사용되는 환율은 역내 위안화(“CNY”)가 아닌 역외 위안화(“CNH”)와 관련이 있습니다. CNH 의 가치는 CNY 의 가치와 상당히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외부 시장원리(market force) 외에도, 중국 정부가 수시로 부과하는 외국환 관리 정책, 본국 송금 규제 등 다양한 요소에 기인합니다.
파생상품거래 - 특별	펀드들은 보다 복잡하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생상품 거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스왑계약 ✧ 통화위험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 위한 통화 파생상품 거래 ✧ 추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커버드 콜옵션 발행 ✧ 신용 리스크를 매수 또는 매도하기 위한 신용불이행스왑 ✧ 변동 위험을 조정하기 위한 변동성 파생상품 거래 **신용불이행스왑 (CDS)** 신용불이행스왑은 통상적으로 채권에 대한 직접 투자 보다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이행스왑은 불이행리스크를 이전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들은 (투자의 헷지를 위하여) 보유하는 채권에 기하여 보장을 매수하거나, 신용이 질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물리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채권에 기하여 보장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보장을 매수하는 측은 보장을 매도하는 측에게 일련의 지급을 하고, "신용사유" (해당 계약에 정의되는 신용의 질적 하락)가 발생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모든 요구되는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스왑은 추가 지급없이 만기시에 종료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의 리스크는 지급된 프리미엄에 국한됩니다. 신용불이행스왑에 대한 시장은 채권시장보다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불이행스왑을 체결하는 펀드는 항상 상환요구 (redemption requests)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신용불이행스왑은 본 회사의 감사인이 검토한 검증 가능하고 투명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됩니다. **변동성 파생상품** 증권 (또는 하나의 바스켓을 구성하는 여러 증권들)의 “과거 변동성”은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증권(들)의 가격변동의 속도와 크기를 통계적으로 측정한 수치입니다. “내재 변동성”은 미래 실현될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나타냅니다. 변동성 파생상품은 과거 변동성, 내재 변동성 또는 양자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는 파생상품을 말합니다. 변동성 파생상품은 관련 바스켓을 구성하는 기초증권들에 근거하며, 펀드들은 기초증권 시장에서 예상되는 상황전개를 판단하여 (변동성의 변화에 대한 투자의견을 표시하기 위하여) 변동성 위험이 증대 또는 감소되도록 변동성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가격이 새로운 상황에 따라 조정됨에 따라 증권가격의 변동성은 증대할 것입니다. 펀드들은 (1) 지수의 구성에 있어 충분히 위험이 분산되어 있고, (2) 지수가 해당 지수가 나타내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기준치를 나타내며, (3) 지수가 적절한 방식으로 공고되는 경우에만 해당 지수에 근거하여 변동성 파생상품을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습니다. 변동성 파생상품의 가격은 대단히 변화가 크며 펀드의 다른 자산들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화 오버레이 전략** 환위험 관리를 위한 기법에 추가하여 (“환위험” 참조) 특정 하위펀드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기준통화 이외 통화에 투자하거나 통화와 관련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문회사는 통화와 관련된 롱포지션과 합성 페어 트레이딩(pair trading)을 수반한 특별한 통화 오베레이 전략을 활용할 수 있으며, 선도환계약, 통화선물/옵션/스왑 및 금리 변화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공해주는 기타 증서와 같은 통화 파생상품을 활용하여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많이 활용하는 하위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은 이러한 하위펀드의 전반적인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위펀드는 이머징 시장 통화를 포함한 전세계 통화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통화는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정부개입, 자본통제, 고정통화제(currency peg mechanisms) 등과 같은 정부와 중앙은행의 조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의 이전**

	펀드는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파생상품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러한 경우 펀드의 자산으로부터 담보 또는 증거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보 또는 증거금에 대한 권리는 거래상대방에게 이전되어 거래상대방의 자산에 편입되며 거래상대방의 사업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전된 담보는 보관회사에 의하여 보관되지는 않지만, 담보물과 관련한 지위는 보관회사에 의하여 감독 또는 조정될 것입니다. 펀드가 해당 거래상대방을 위하여 담보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해당 거래상대방은 펀드의 동의 없이는 해당 담보물을 다시 재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RQFII 투자 관련 특정 위험	**RQFII 위험** RQFII 제도는 2011 년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RQFII 를 통한 중국에의 투자 및 관련 절차(RQFII 에 투자한 자본금의 본국으로의 송금 등)를 규제하는 규정도 비교적 신설된 것입니다. 현재, RQFII 의 위안화 본국 송금은 하루에 1 회 허용되며, 본국 송금 제한이나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중국 관할당국 및 규제당국에 투자규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량권이 현재 또는 향후 어떠한 식으로 행사될 지 확실하지도 않고 그 선례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투자규정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될 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RQFII 제도가 향후 어떻게 발전할 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RQFII 투자펀드들의 RQFII 투자에 대해 본국 송금 제한 조치가 부과될 경우 이는 해당 RQFII 투자펀드들은 환매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QFII 제도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RQFII 자격 상실 가능성 등)은 해당 RQFII 를 통하여 중국의 적격한 증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RQFII 투자펀드들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RQFII 자격이 중단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해당 RQFII 펀드들이 보유한 RQFII 적격증권을 처분해야 하므로 해당 RQFII 투자펀드들의 성과는 그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RQFII 쿼터 할당 및 이해상충 위험** RQFII 는 RQFII 투자펀드의 투자자문회사/하위투자자문회사 겸 RQFII 인가보유자로서의 역할을 모두 맡고 있습니다. RQFII 는 RQFII 쿼터 할당으로 인하여 이익을 보는 여러 개 QFII 투자펀드들의 투자자문회사 또는 하위투자자문회사로 행위할 수 있습니다. 모든 RQFII 투자펀드들에게 할당하기에 RQFII 쿼터가 부족할 경우 이러한 RQFII 쿼터를 다른 펀드들의 이익을 희생하여 특정 RQFII 투자펀드(들)에게만 할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QFII 가 항상 RQFII 투자펀드들이 투자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RQFII 쿼터를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RQFII 투자펀드들은 제한적인 투자능력 때문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거나 또는 RQFII 쿼터가 부족하여 투자목적이나 투자전략을 완전히 추구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쿼터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RQFII 가 자신의 RQFII 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 외환관리국은 해당 RQFII 쿼터의 규모를 감소시키거나 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외환관리국에서 RQFII 쿼터의 규모를 감소시키는 경우, 이는 RQFII 투자펀드들의 할당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RQFII 투자펀드의 투자목적을 효과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RQFII 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QFII 투자제한 위험** RQFII 는 RQFII 투자제한으로 인하여 RQFII 투자펀드들이 투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으나, 투자자들은 관련 중국 법규에 따라 RQFII 가 수시로 중국의 특정 발행인이 발행한 중국 A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i) RQFII 와 같은 해외투자자가 상장된 중국 발행인의 총 자본금의 10%를 보유하는 경우(RQFII 가 다수의 최종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지 여부를 불문함), 및 (ii) 모든 해외 투자자들(RQFII 투자펀드들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여타 QFII 및 RQFII 를 포함)이 보유한 중국 A 주식 총액이 상장된 중국 발행인의 총 자본금의 30%에 상당하는 경우 등 여러 상황에서 상기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RQFII 들은 관련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중국 A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위의 (ii)항에 해당하는 경우, 각 RQFII 는 "후입선출법" 방식으로 중국 A 주식을 처분합니다.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RQFII 를 통하여 중국 A 주식에 투자하는 RQFII 투자펀드들의 능력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A 주식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중단, 제한 및 기타 교란행위** 상하이증권거래소 및/또는 선전증권거래소가 수시로 부과하는 특정 주식에 대한 임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거래중단으로 인하여, 또는 특정 투자자산이나 시장전반에 대한 감독당국 또는 정부의 개입에 따라 중국 A 주식의 유동성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중단 조치 또는 법인조치로 인하여 RQFII 투자펀드들이 RQFII 를 통한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운용 및 주기적인 조정의 일환으로 주식에 대한 포지션을 취득 또는 청산하거나 환매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RQFII 투자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RQFII 투자펀드가 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 A 주식의 상당한 시가 변동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는 현재 동일 거래일에 중국 A 주식 가격의 변동 가능한 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일 한도는 현재 10%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증권 가격이 전날 결제가격 대비 (개장시간 동안) 변동할 수 있는 최대 상한가 및 하한가를 의미합니다. 일일 한도는 가격변동만을 규제할 뿐이며 해당 한도 내에서의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도로 인하여 여하한 증권이 공정가치 또는 실현 가능한 가치에 청산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즉, 해당 RQFII 투자펀드가 불리한 포지션을 처분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도가 잠재적 손실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시점에 혹은 특정 중국 A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유동적인 시장이 존재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RQFII 보관회사 및 중국 자산에 대한 여타 예탁기관 관련 거래상대방 위험** RQFII 쿼터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은 RQFII 보관회사가 RQFII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전자양식으로 보유하며, 현금의 경우 RQFII 보관회사에 개설된 위안화 현금계좌(들)(이하 "RQFII 투자"에 정의됨)을 통하여 보관됩니다. 해당 RQFII 투자펀드의 중국 내 RQFII 증권계좌(들) 및 위안화 현금계좌(들)은 시장 관행에 따라

보관됩니다. 이러한 계좌에 있는 자산은 RQFII 자산과 분리되어 보관되며, 오로지 RQFII 투자펀드 자산으로 귀속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법기관 및 규제당국은 향후 이러한 입장을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당 RQFII 투자펀드는 또한 여하한 거래의 체결이나 결제 또는 여하한 증권이나 자금의 양도 과정에서 RQFII 보관회사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RQFII 보관회사가 위안화 현금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관행상 분리되지는 않겠지만 RQFII 보관회사가 RQFII 투자펀드의 예탁기관 자격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채로 취급됩니다. 이러한 현금은 RQFII 보관회사의 여타 고객 소유의 현금과 섞여 있습니다. 해당 RQFII 투자펀드는 RQFII 보관회사에 개설된 현금계좌에 예치된 현금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지 않으며, RQFII 보관회사의 도산 시, RQFII 보관회사의 무담보 채권자가 되어, RQFII 보관회사의 모든 다른 무담보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에 놓이게 됩니다. RQFII 투자펀드는 해당 부채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부채 회수가 지연되거나 부채를 전액 혹은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RQFII 투자펀드는 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중개인(들) 관련 거래상대방 위험
RQFII 는 중국의 중개인들("중국 중개인(들)")을 선임하여 해당 RQFII 투자펀드 관련 거래가 중국 시장에서 체결되도록 합니다. RQFII 는 각 선진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대하여 한 명의 중국 중개인만 선임할 수 있으며, 이들은 동일인일 수도 있습니다. 선진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 각각에 대하여 최대 3 명의 중국 중개인들을 선임할 수 있으나, 증권의 최초 매입을 담당한 중국 중개인을 통하여 해당 증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중국의 요건으로 인하여 관행상 각 증권거래소에 대하여 단 1 명의 중국 중개인을 선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RQFII 가 해당 중국 중개인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RQFII 투자펀드 운영 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RQFII 투자펀드는 또한 여하한 거래의 체결이나 결제 또는 여하한 증권이나 자금의 양도 시 RQFII 보관회사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중국 중개인만 선임된 경우, 해당 RQFII 투자펀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최소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RQFII 는 중국 중개인의 선임 시, 수수료율의 가격경쟁력, 관련 주문의 규모 및 체결기준 등의 요인을 고려합니다.

RQFII 투자펀드가 채무불이행, 도산 또는 중국 중개인의 자격 박탈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RQFII 투자펀드는 그러한 중국 중개인을 통한 거래 체결 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RQFII 투자펀드의 순자산가치도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중개인(들)에 대한 이 투자회사의 익스포저를 낮추기 위하여, RQFII 는 선임된 중국 중개인이 평판이 있는 기관이며 그 신용위험이 이 투자회사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활용합니다.

위안화의 송금 및 본국 송금
RQFII 의 위안화 본국 송금은 현재 하루에 1 회 허용되며, 본국 송금 관련 제한, 자금의 동결 기간(lock-up period) 또는 감독당국의 사전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내 위안화를 역외로 송금할 때 제한이 있으며 진정성(authenticity) 및 법규준수 관련 검토도 이루어져야 하고, RQFII 보관회사는 중국 외환관리국에 송금 및 본국 송금에 관한 월별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향후 중국 법규가 개정되지 않으리라는 보장 혹은 본국 송금 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중국 법규에 대한 이러한 변경사항은 소급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RQFII 투자펀드의 현금에 가해지는 본국 송금 제한은 동 펀드의 환매 이행 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RQFII 보관회사는 본국 송금 시마다 진정성(authenticity) 및 법규준수 관련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본국 송금이 지연될 수 있으며, 심지어 RQFII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RQFII 보관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환매대금은 해당 자금의 본국 송금이 완료된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이내에 환매하고자 하는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본국으로 송금하기까지 걸리는 실제 시간을 RQFII 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위험
2014 년 11 월 14 일에 중국 조세당국은 RQFII 투자자들이 중국 A 주식에서 얻은 소득을 2014 년 11 월 17 일부터 중국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 조치는 중국 A 주식(중국의 부동산이 회사 가치의 일정 부분을 넘는 이른바 'land-rich' 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만 중국 역내 채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의 일몰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아 통지 여부를 불문하고 중국 조세당국이 이를 임의로 종료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소급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조세당국은 해당 펀드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조세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시적인 면세조치가 폐지되는 경우, RQFII 를 통하여 투자하는 RQFII 투자펀드는 중국 A 주식 관련 소득에 대하여 중국 과세 대상이 되므로, 그 결과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조세협약에 따라 완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에 따른 혜택도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중국 조세당국의 더 정확한 향후 입장발표에 따를 것으로 조건으로 위에 기재된 한시적인 면세조치가 중국 역내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RQFII 투자펀드와 그 투자자들의 중국 역내 채권 관련 소득은 중국에서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는 조세협약의 조건에 의거 완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그에 따른 혜택도 투자자들에게 돌아갑니다.

반면, 중국/룩셈부르크 조세협약에서는 'land-rich' 기업들이 발행한 중국 A 주식을 제외한 중국 A 주식/중국 역내 채권의 매각 시 중국의 자본소득세로부터 면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RQFII 투자펀드는

	중국/룩셈부르크 조세협약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RQFII 투자펀드는 'land-rich' 기업들이 발행한 중국 A 주식을 제외한 중국 A 주식/중국 역내 채권의 매각 시 중국의 자본소득세로부터 면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조세당국에서 조세협약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하는 여러 기준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침을 내지 않았으며, 해당 당국의 입장도 사실상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중국 조세당국에서 RQFII 투자펀드가 중국/룩셈부르크 조세협약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자본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조세당국에서 중국 역내 채권에 대한 소득을 중국 조세목적상 수익(interest)으로 인식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수익(interest)은 중국/룩셈부르크 조세협약 상 중국 조세로부터의 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